

## 대학원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운영 내규

2025.12.10. 개정  
2026.3.1. 이후 적용

###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파이버시스템공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 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2.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 3.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 제4조 (교육과정)

- ① 본 교육과정의 운영은 파이버시스템공학 주임교수가 주관한다.
- ② 일반대학원 파이버시스템공학을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각기 파이버시스템공학 공학석사(Master of Engineering)와 공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Engineering)를 수여한다.

#### 제5조 (과목개설)

일반대학원 파이버시스템공학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 중 최근 4학기에 개설된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을 선정하여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학과 전임교원을 기본으로 필요시 외부강사를 배정하며, 매 학기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4.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입학 후 1학기가 지난 시점에 학생들이 개별상담을 통해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5.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일반대학원 파이버시스템공학의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연구논문으로 한다. 석사과정은 주저자로 출간한 SCI급 논문 1편 이상 혹은 KCI 논문 2편 이상, 박사과정은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SCI급 논문 2편 이상 혹은 KCI 논문 4편 이상 혹은, SCI급 논문 1편 및 KCI 논문 2편 이상으로 한다. 논문은 '게재가(Accepted)'로 판정한 시점으로부터 인정한다.

※ SCI급 논문의 상세 내용 및 인정 여부는 교수회의를 통해 정한다.  
(2026.3.1.시행)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임.

※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음.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예시 :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

#### 6.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학위작품 중 하나 또는 복수로 선택하여 학과 내규로 문서화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선택한 취득방법을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

## 7.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는 논문심사 3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논문심사는 교수 3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예비발표) 논문심사 전 예비발표는 교수 3인 이상의 참석 하에 논문심사 1개월 전까지 실시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석사논문 심사위원은 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하며, 박사논문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학과교수 3인 이상과, 외부 심사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8.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